

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정 415- 23947	(전화번호 02-9553)	전결유형	전결사
처리기간	구 청 장		시 청	
시행일자	가.	전결 10 27		
보존년한				

보조기관	건설과리주장	협조	총무과장		
	도정비과장		기획계장		
	도정배계장		(법무과)		
기안책임자	한득규	가. 10. 27. (취부)	조	도계획계장	이

경수참조	유신조	작 안 참 조	발신	고시제 20 호	통	1978.10.28
------	-----	---------	----	----------	---	------------

제 목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지적 승인
 (제 1안) 내부결재
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호 (가. 6.15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고시된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의 건설부 고시 제 4호 (가. 3.16)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별안과 같이 지적승인 조치 합니다.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						경서
구분	유형	면적	연장	기 점	종 류 비고	②
신설	도로	193.20㎡	1,000M	상서구 마곡동 55-3	상서구 마곡동 261-5	

관인

(제 2안)
 고 시 안.
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지적 승인.

원본은 가. 10. 27. 도시정비과보관

지방공무원기원본

원본 대조필



참조 : 문화공보판
 제목 : 관(시)보 게재 의뢰
 별첨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 지적
 승인 자항을 고시하고 관(시)보에 게재코자 하오니
 게재 조치 바랍니다.

가. 게재 구분 : 고 시
 나. 게재 선명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지적
 승인.

다. 법적 근거 : 도시계획법 제 13조.

첨 부 : 고시문 사본 1부 (1부) 끝.

(제 5 안)

수 신 : 건설부 장관 발 신 : 서울특별시장

참 조 : 도시계획과장

제 목 : 동 건 본 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88호(1970.6.15)로
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
 타 건설부고시 제 41호(1971.3.16)의 권한 위임 규정
 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별첨과 같이 보고 합니다.

첨 부 : 1) 고시문 사본 1부
 2) 현황도 1부 및 지적도 2부. 끝.

(제 6 안)

수 신 : 서울특별시장 발 신 : 구 청 장

참 조 : 시민화장

제 목 : 고시 번호. 삽입 및 관인 날인 의뢰.

영구에서 처리할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
지적승인사항을 고시하고자 하오니 번호를 부여
하시코 중앙부서 시행문에 시장 확인을 통한 시행
조치 바랍니다.

- 첨부: 1) 고시관계 서류 사본 1건
- 2) 관보 게재 의뢰 및 건설부 보고문 각 1부
끝

(제 7 안)

수신: 시 민방사업장 발신: 구청장

제목: 등 권 통 분

별첨 고시문 및 도면과 같이 도시계획시설
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13조에 의거 지적승인
하였으나 관계 업무에 참고 할 것

- 첨부: 고시문 사본 1부 및 지적도 1부 끝

